

● 주재원-과건비자 소지자의 멕시코사회보장청 (IMSS) 가입의무

멕시코시티 무역관

조우현 변호사/Cho & Asociados 법무법인

(cho@choasociados.com)



D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멕시코 현지법인으로 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하는 워킹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직원들과 한국본사에서 파견되어 한국본사로 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주재원-단기과건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멕시코 노동법 상 멕시코 현지법인이 주재원-단기과건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을 멕시코사회보장청 (IMSS)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 저작권자 © 멕시코 조우현변호사 2017 작성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Copyright 2017 Woo Hyun Cho All Rights Reserved.

멕시코에서 단기거주비자 (Tarjeta de Residente Temporal)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i)주재원-단기과건비자 Non-Lucrative Residence Visa (제 3국에서 급여 받는 조건) 와 ii) 워킹비자 Lucrative Residence Visa (멕시코에서 급여 받는 조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재원-단기과건비자 소지자가 IMSS에 가입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들도 멕시코 노동법의 영향을 받는가? 한국주재원들은 한국에서 모든 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급여소득/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고 IMSS에도 가입하지 않는데 이것은 멕시코 세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가?

한국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들과 멕시코 현지법인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노동(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 연방노동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본사(파견회사)가 주재원 (파견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을 가입하여 멕시코에서 산재 발생 시 실질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법인(파견요청회사)이 고용주로 간주되어 파견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 노동법 15조 A항~D항]

◇ 급여소득세 납부의무

단기과건비자-주재원은 멕시코에서 급여를 수령하지 않기에 급여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멕시코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저작권자 © 멕시코 조우현변호사 2017 작성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Copyright 2017 Woo Hyun Cho All Rights Reserved.

한국에서 수령한 급여를 다시 멕시코로 송금하여 멕시코에서 수령 시, 소득창출이 멕시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에 해당 송금 금액에 대해 소득 원천세를 멕시코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멕시코 소득세법 154조와 이중과세 방지협약 15조]

◇ IMSS 가입의무

현실적으로 해외법인인 한국본사가 멕시코 연방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의거 멕시코 IMSS에 고용주로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차후 멕시코 노동청 조사 시 혹은 파견근로자가 해당기관에 고발 시 멕시코 법인이 고용주로 간주되어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 받을 것입니다. 단순히 비자성격이나 급여지급 주체가 누구냐 문제가 아니라 멕시코 연방노동법 파견근무제(아웃소싱)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2012년 11월 말 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된 멕시코 연방노동법은 파견회사보다 오히려 파견요청회사에 더 많은 의무사항을 강화하여 파견회사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요청회사를 고용주로 간주하여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연방노동법은 파견회사가 멕시코 국내 개인 및 법인이라고 한정 한 것이 아님으로 한국본사나 한국업체로부터 파견근로계약을 통해 파견근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파견근무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는 멕시코 헌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파견요청회사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파견요청회사의 IMSS에 가입되어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봐야합니다.

해외투자 Tip

α 고액의 임금을 수령하는 한국인 주재원들에 대해 개인급여소득세 절감 및 IMSS 미가입을 통한 절세목적으로 장기간 멕시코에 거주하게 될 장기 파견근로자-주재원으로 비자를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인 아니라고 본다. 멕시코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단기체류비자-워킹비자를 받게하여 IMSS 예도 피고용인으로 가입해 주고 해외수당 정도의 금액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여 멕시코에서 급여소득세를 납부하고 가능하면

< 저작권자 © 멕시코 조우현변호사 2017 작성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Copyright 2017 Woo Hyun Cho All Rights Reserved.

상당부분 나머지 급여는 한국본사로 부터 수령하여 한국에서 급여소득세 원천세금을 내고 멕시코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저작권자 © 멕시코 조우현변호사 2017 작성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Copyright 2017 Woo Hyun Cho All Rights Reserved.